

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사문서의 일자확정 사무처리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, 수수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사문서의 일자확정을 법원서기관, 법원사무관, 등기사무관, 법원주사, 등기주사,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에게 청구할 수 있음(안 제1조)
- 사문서의 일자확정청구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하고, 수수료의 영수필의 취지는 영수필 라벨을 붙이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함(안 제2조제2항)

4.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법원서기관, 법원사무관,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”를 “법원서기관, 법원사무관, 등기사무관, 법원주사, 등기주사,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현금으로”를 “현금 또는 신용카드로”로, “영수필증을 첨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(器機)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”를 “영수필의 취지가 표시된 라벨을 붙이거나 기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문서의 일자확정을 <u>법원서기관, 법원사무관,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</u>에게 청구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수수료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수수료는 <u>현금으로</u> 납부하여야 하며, 법원공무원은 당해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소정 수수료의 <u>영수필증을</u> 첨부하여 <u>소인하거나 기기(器機)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</u>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법원서기관, 법원사무관, 등기사무관, 법원주사, 등기주사,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</u>----- -----.</p> <p>제2조(수수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현금 또는 신용카드</u> ----- ----- ----- <u>영수필의 취지가 표시된 라벨을 붙이거나 기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</u> ----- -----.</p>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	
연락처	(02) 3480-1396